

# 시간제 등록생 운영 규정

제정 2001. 9. 1. 개정 2013. 3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학칙 제60조에 의거 시간제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이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한 학생은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.

**제3조(등록자격)** 대학(교) 휴학생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**제4조(선발방법)** 시간제 등록생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선발하며,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등록인원)**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 10% 이내로 한다.

**제6조(교육과정)** 교육과정은 통합반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반으로 편성하여 각각 운영한다.

**제7조(이수학점)** ① 시간제 등록생의 이수가능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까지로 한다.

② 시간제등록으로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

**제8조(납입금)** 시간제 등록생의 납입금은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책정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학위수여)**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우리 대학 동일 학과에서 5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, 전체 취득학점이 80학점 이상일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**제10조(준용)**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학칙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